



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개선을 위한 납부기간 확대 방안

최장훈 연구위원

요약

■ 국민연금은 평균소득자의 경우 소득대체율 40%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, 실질소득대체율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됨. 실질소득대체율이 낮은 것은 국민연금의 실제가입시점의 지연과 납부예외 등에 기인함. 따라서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가입기간 연장, 추후납부와 크레딧제도 등 기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임.

■ 국민연금은 평균소득자의 경우 소득대체율¹⁾ 40%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, 실질소득대체율²⁾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됨(〈표 1〉 참조).

●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최대납부가능기간의 절반수준에 해당되는 실질납부기간을 적용하여 산출되기 때문임.

－ 예컨대, 1957년생의 경우 최대납부가능기간을 29년으로 가정하고 산출된 소득대체율은 43.6%이지만, 실질납부기간인 11.7년을 토대로 산출된 실질소득대체율은 19.4%임.

〈표 1〉 출생연도별 예상 실질소득대체율

(단위: %)

출생연도	1955~59	1960~64	1965~69	1970~74	1975~79	1980~
최대납부가능기간 ¹⁾	29년	34년	39년	42년	42년	42년
소득대체율 ²⁾	43.6	49.1	54.4	55.9	52.1	49.9
실질납부기간 ³⁾	11.7년	14.9년	18.5년	22.3년	25.6년	26.7년
실질소득대체율 ³⁾	19.4	22.5	26.2	29.5	30.7	29.8

주: 1) 최대납부가능기간은 출생연도별 중앙값을 기준으로 계산함(예, 1957년생의 최대납부가능기간=국민연금제도 시행연도인 1988년도 연령인 31세에서 59세까지의 기간).

2) 소득대체율은 최대납부가능기간을 국민연금 연금액산식에 적용하여 계산하였음.

3) 최기홍·신승희(2014), 『국민연금 이력자료에 의한 계층별 특성치의 통계적 추정』, 국민연금 연구보고서.

1)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급여액의 비율.

2)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대체율.

■ **실제납부기간이 최대납부기간보다 짧은 이유는 국민연금의 실제가입시점 지연과 납부예외 등에 기인함.**

- 국민연금의 가입시작연령은 18세로 보고 있으나 실제 가입시점은 이보다 상당히 늦어져 실질적인 납부기간이 줄어들음.
 - 고등교육의 확대(대학·대학원 진학)로 청년기의 일정부분을 적용제외 상태에서 보냄.
 -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도 취업률의 감소로 납부기간 확대에 기여하지 못함.³⁾
- 국민연금 가입을 하더라도 고용불안정 등으로 상당부분을 납부예외상태⁴⁾에서 보냄.

■ **따라서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가입기간 연장, 추후납부와 크레딧제도 등 기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**

- 늦어진 가입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무가입기간을 연금수급개시연령 연장에 맞추어 연장하도록 조정한다면 실질소득대체율 상승에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임.
 - 현재 국민연금은 연금수급개시연령을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세씩 연장하여 2033년에 65세가 되도록 조정하였으나, 의무가입기간은 연장하지 않고 59세를 유지하고 있음.
- 추후납부제도⁵⁾의 보완을 통해 납부예외상태에 있었던 기간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인 정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.
 - 추후납부의 경우 실제로 납부한 시점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하여 급여를 계산하고 있으나, 납부해야 했던 과거시점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한다면 추후납부제도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임.
- 출산·군복무크레딧⁶⁾제도 강화로 국민연금제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.
 - 출산크레딧은 현 둘째 자녀 이상에서 첫째 자녀부터 적용되도록 범위조정을 검토할 수 있음.⁷⁾
 - 군복무크레딧은 현 6개월에서 병역의무기간의 반 이상으로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을 고려할 수 있음. **kiri**

3) 우해봉·한정림(2013), 『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이력과 급여수준 분석』, 국민연금 연구보고서.

4) 실직, 재해, 사고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상태임.

5) 추후납부는 납부예외사유에 해당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.

6) 출산크레딧은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12~50개월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,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이후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6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임.

7) 실제로, 현행 둘째 자녀 이상부터 적용되는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1인당 3년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6년 7월 법안 발의된 상태임.